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금융감독원

보도시점 2026.11.27.(금) 09:00 배포 2026.11.26.(목) 09:00

금융회사 검사·제재·인허가 전반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합니다.

-「금융행정 쇄신방안」 마련 -

✓ 사후적발식 검사·제재에서 사전예방적 검사·제재로 전환
- **정기검사**는 **핵심·취약부문**에 **집중**하고, **범위**와 **주기**를 **사전**에 **안내**
- **경미한 위반**은 **시정기회**를 넓히고, **자율 시정 노력**에 대한 **제재감면 확대**
- **검사원 KPI** 개선, **컨설팅 유형 조치 비중** 관리 등 **제반 여건 정비**

✓ 검사·제재 과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
- **중간 검사 결과 공개 원칙적 금지**, **금융거래정보 요구 내부통제 강화**
- 기관간 일관된 제재조치를 위해 **동일 행위 제재절차 정비**, **사전협의 강화**
- **제재 양정기준 전반**을 **정비**하고, **제재**의 **불이익한 사후효과 합리적 조정**

✓ 금융회사의 수검 부담을 완화하고 공정성·투명성 제고
- **검사 사전통지 생략**은 **제한**하고, **무분별한 검사기간 확대 방지**
- **현장방문·필사**만 가능한 **제재심 안건 사본 사전교부**
- **인허가 심사중단제** "**중단→재개**" 원칙 변경, **심사종결제 신설**

1. 회의 개요

금융위원회(위원장 이억원)와 **금융감독원**(원장 이찬진)은 '26.11.27(금) 9시, **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**에서 **양기관**의 **기관장**과 **주요 간부**들이 참석한 가운데 「**금융행정 쇄신방안**」을 발표하였다.

< 회의 개요 >

- **일시/장소**: '26.11.27.(금) 09:00 /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
- **참석자**: [금융위] 금융위원장, 상임위원(2인), 증선위원(1인), 금융정책국장 등
  [금감원] 금융감독원장, 부원장(4인), 소비자보호총괄 부원장보 등
- **논의안건**: 금융행정 쇄신방안

2. 추진경과

그간 **금융위원회**와 **금융감독원**은 **금융회사 검사, 제재, 인·허가 전반**의 쇄신을 위해 **다각적인 노력**을 **지속 추진**하였으나, **사후적발식 검사 행태**가 지속되고, **사회적 이슈 사안**에 대한 **중간 검사결과 발표 논란**이 발생하는 등 **국민 눈높이에 부합**하지 못한다는 **지적**이 지속되어 왔다.

'25년 9월 **정부조직 개편방안** 마련 시 **금융감독원**에 대한 **민주적 통제 강화**를 위해 **금융감독원**을 「**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**」에 따른 **공공기관**으로 **지정**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, **공공기관운영위원회**는 올해 1월 공공기관 지정이라는 **형식**보다는 **실질**적인 면에서 **금융감독원 운영**과 **업무 전반**의 **공공성·투명성**을 **제고**하는 조건을 전제로 **지정**을 **유보**하였다. **공공기관운영위원회**는 **금융감독 업무 혁신**을 위해 ❶기존 **제재** 위주에서 **사전·컨설팅 검사**방식으로 전환, ❷**검사결과 통지 절차** 마련, ❸**기타 검사·제재 절차·면책** 등 **금융감독 쇄신방안**을 마련토록 하였다.

- ('25.9.7. 정부조직 개편방안) 금감원·금소원 **공공기관 지정 방안 발표**
- ('25.9.25. 정부조직 개편 수정 고위당정대) 별도 법률 개정 없이 금융감독 체계상 소비자보호 기능의 **공공성·투명성 제고방안 우선 추진 논의**
- ('26.1.29. 공운위) 기타공공기관 이상 **경영관리 강화**, **금융감독 전반 쇄신**, **금융소비자 보호** 조건 전제 **지정유보**

이에 **금융위원회**와 **금융감독원**은 **쇄신 방안 마련**을 위해 **외부 전문가**로 **구성된 TF**를 운영(3~11월)하여 **다양한 의견**을 **논의**하였으며, **수검기관 간담회**와 **온라인 익명 사서함***(3~11월) **운영** 등을 통해 **금융업권**과 **국민의 의견**도 청취하였다.

* 금융위원회, 금융감독원,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75건의 건의사항 제안

금융위원회와 **금융감독원**은 **금융행정**과 **감독 전반**의 **구조적인 쇄신**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**금융회사**의 **보수적인 업무 관행**을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, **금융행정의 공공성·투명성 제고**를 통한 **신뢰 확보**를 위해 **검사·제재·인허가** 등 **전반**의 **쇄신 방향**을 마련하였다.

3. 금융행정 쇄신방안

첫째, 사후 적발식 검사·제재에서 사전예방적 검사·제재로 전환한다.

❶ 정기검사는 **본래 도입 취지**대로 "**사전예방적 기능**"을 **규정화**한다.

'22년 **종합검사**를 폐지하고 "**정기-수시검사 체계**"로 개편하였음에도, 정기검사가 **저인망식, 불규칙적으로 운영**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. 앞으로는 **정기검사**란 "**경영실태평가**"와 "**핵심·취약부문 검사**"임을 명시하고, 업무 전반에 대한 정기검사는 **원칙적으로 금지**된다.

< 검사체계 개편 주요 내용 >

현행 규정		개선	
정기	금융기관 규모, 시장영향력 등 감안 **일정 주기**로 **정기적** 실시(**1개월전** 통지)	정기	**"경영실태평가+핵심·취약부문 검사"**를 금융기관 규모, 시장영향력 등 감안, **일정 주기**로 **정기적** 실시(**1개월전** 통지)
수시	금융사고예방, 금융질서 확립 등 감독상 필요로 **수시 실시**(**1주일전** 통지) 현안 등 사유로 **통지생략** 가능 (소위 **긴급검사**)	수시	금융사고예방, 금융질서 확립 등 감독상 필요로 **수시 실시**(**7영업일전** 통지) **금융사고, 재무건전성 악화** 등 사유로 **통지생략** 가능

또한 준법검사가 주로 이뤄지는 "**핵심·취약부문 검사**"의 범위는 **사전에 구체적으로 통지**하고, 검사 중 **추가 위규 의심 사항**을 발견하여 **검사 범위 확대**가 필요한 경우에도 **전결권 상향, 사유 관리** 등 절차를 강화한다.

* (핵심) 건전성 관리 등을 위해 검사시 항상 확인해야 하는 부문 사전지정
(취약) 업권별, 회사별, 시기별 취약요인을 상시감시 결과에 따라 선정

이와 함께 검사주기가 **비교적 정형화**되어 있는 **대형 금융회사**는 **연초 검사계획 마련**시 **업권별 주기를 통지**하고 검사 시기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후 **검사계획 수립·통지** 시 안내하여 **수검기관의 예측가능성**을 제고한다.

경영진·이사회 등과 면담시에는 **필수적**으로 **경영·영업상 특징, 우수·미흡 사례 공유, 내부통제 점검 결과** 등 **컨설팅 항목**을 **설명**하여야 하며, 새로 도입되는 **주요 제도**나 **신규로 진입한 금융회사**에 대해서는 **초기 단계**에서 **사전컨설팅**을 우선 실시하고 **신규회사의 경미한 위법행위**는 **시정조치**를 우선 부과한다.

❷ “처벌 위주의 제재”에서 벗어나 “자율 시정 기능”을 확대한다.

금융회사가 자체 시정한 경미한 위반행위 등은 검사현장에서 시정·개선·주의조치할 수 있도록 검사제재규정에 요건을 명시하고, 준법교육 이수 시 신분제재 면제 범위도 확대(주의→주의적 경고)하며, 자율적 시정 노력을 충분히 기울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과태료 감경 상한을 높이는(예: 50→75~100%) 등 제재 감경·면제를 확대한다.

이 외에도 생산적, 포용금융 관련 여신업무 면책을 적극 추진하고, 시정·중지명령, 조치사실 공표 등 시정조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는 등 자율시정 기능을 확대한다.

❸ 사전예방적 검사·제재 전환을 위한 제반여건도 정비한다.

검사 분야에서는 검사원의 성과평가(KPI)에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반영하고, 합리적 절차와 판단기준에 따라 예방·개선 중심으로 검사를 수행한 경우에는 면책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.

제재 분야는 컨설팅 유형 조치 비중을 지속 관리하고, 제재 대체적 조치 미이행 또는 동일 사안 위반 시 제재 가중사유로 명시할 예정이다.

둘째, 검사·제재 과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.

❶ 중간검사 결과 공개 금지 등 검사 업무의 책임성 제고방안을 마련한다.

먼저, 중간검사 결과의 공개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. 별도 공보준칙을 마련해 소비자 보호, 오보 정정 등 예외사유를 엄격히 한정하며, 소비자 피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소비자 경보, 금융회사 앞 유의사항 전파 등 대체적 조치를 우선 추진하도록 한다. 예외적 공개 시 신원정보나 제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 등은 공개가 제한되며, 공개가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내부, 금융위원회 사전 협의 등 강화된 절차를 거쳐야 한다.

실명법상 영장 없이 가능한 금융거래정보 열람에 대한 내부통제도 강화한다. 전결권자를 상향 조정(부서장→부원장보)하고 열람 사유를 소명토록 하며,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한 금융거래정보 열람시 전결권자 알림 발송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.

금융감독원 내 **외부위원**이 **과반 이상**으로 구성된 "**검사권익보호심의회**"를 **신설**한다. **금융회사 이의제기**, **시정요청** 등 **수검대상 권익보호**를 위한 사항을 **심의**하거나 **보고**받는다.

검사결과 보고도 **내실화**한다. **대형 금융회사 정기검사** 등 **건전성 관리 관점**에서 **유관기관 공유**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금융위원회 보고를 강화하고, **시스템 리스크** 등 우려 시 검사종료 후 **지체 없이 금융위원회**에 보고토록 사유·절차 등을 구체화한다.

❷ **금융위원회**와 **금융감독원**의 **제재 심의 기능**을 **내실화**한다.

양 기관의 **안건 양식을 통일**하고, **제재안건정보시스템을 신설**하여 관련 자료를 **신속 공유하는** 등 **업무 공조**를 **시스템화**하여 **제재 일관성·신속성**을 **제고**할 예정이다.

또한, **동일 사건**에 대해 **금융위원회**와 **금융감독원장 조치**가 나눠져 있는 경우에는 **금융위원회 의결**후 **금융감독원장 조치**를 통보하며, **금융위원회 의결 과정**에서 **조치양정** 등이 변경되는 경우 그 취지에 따라 **금융감독원장 조치를 재검토**하고, 변동사항은 **금융위원회**에 **송부하도록 규정화**한다.

대규모 과징금 부과 및 첫 법령적용 등 **중요 제재 사안**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의 제재심 사전통지 전 금융위원회에 **법령 적용 여부** 등에 대해 **질의·답변**받는 등 **사전협의 절차**를 강화한다.

이와 함께 **금융감독원 제재심 민간위원을 다양화**하고, **금융위원회 소위**에서 **전문가 의견**을 청취하는 등 **전문적·객관적 검토 기능**을 강화한다.

❸ **제재 양정기준** 등의 **공정성**과 **합리성**을 **제고**한다.

과태료 위임전결 기준 정비, **과징금 부과기준·절차 정비** 등 **양정 기준 전반**에 대한 **개정 필요 사항 발굴**을 추진한다. 또한, **신규 사업 진출** 및 **직업선택의 자유**를 **과도하게 제한**하는 **제재 효과**는 **유사 사례 비교*** 등을 통해 **합리적으로 조정**할 예정이며, **행정소송에서 패소 판결** 시 **동일한 법률 쟁점이 있는 사건**에 대한 **직권재심·취소 대상, 절차**도 **구체화**한다.

* (공무원법) 임용·승진 제한: 파면 5년, 해임 3년, 강등·정직 1.5년, 감봉 1년, 견책 6개월
(금융사지배구조법) 임원 결격: 해임권고·면직 5년, 직무정지·정직 4년, 문책경고·감봉 3년

셋째, 수검부담을 완화하고, 업무 전반의 공정성·투명성을 제고한다.

❶ **검사 과정**에서 **수검대상의 권익 보장을 강화**한다.

단순한 현안 점검 등을 위해 **검사 사전통지를 생략**하지 않도록 **금융사고, 재무건전성 악화** 우려 등 **생략사유**를 **구체화**하고, **수시검사**의 사전통지 기간을 **7일에서 7영업일로 확대**한다.

또한, **검사 기간**의 **무분별한 연장**를 막기 위해 **전결권자 상향**(부원장보) 등 **절차**를 **엄격히**하고, **디지털 자료 징구**시 **개인정보 보호 강화**, 법률 자문 자료에 대한 **변호사 비닉권 보장** 등을 통해 **자료요구 부담**을 **완화**한다. **검사 대상기간**은 **원칙적으로 5년**으로 **규정**하여 **장기간 경과**한 행위는 **검사·제재 대상이 되지 않도록** 한다.

❷ **제재 업무**의 **투명성과 예측가능성**을 제고한다.

금융회사의 **제재심 안건 열람 방식**을 **현장방문·필사**에서 **사본 교부 방식**으로 **변경**한다. **제재심** 사전통지 시에는 **최종 처분과 다를수 있음**을 **고지토록 규정**하고, 달라진 심의결과는 **신속히 안내**할 예정이다. **금융위원회**의 **공식적인 사전통지**는 금융감독원의 **제재건의 예정서 접수 후 수행**한다. **제재 결과 공시**는 **회사별 제재내용, 결과** 등이 **검색가능하도록 시스템**을 **개선한다.**

❸ **인허가 업무**에 대해서도 **효율성**과 **신속성**을 제고한다.

인허가 심사중단제는 **무기한 방치**를 막기 위해 **"중단"**에서 **"재개"** 원칙으로 변경한다. 또한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「**금융권 인허가·승인 심사중단제도 운영 실무지침**」을 **인터넷 홈페이지** 등에 **공개**할 예정이다.

신청인 측의 사유로 자료보완 등이 **장기간 지연** 되는 경우에는 **심사를 종결**할 수 있도록 하여, **인허가 적체를 해소**하며, **스몰라이센스 사례별 정비필요 규제**를 살펴보고, **진입·영업 규제 등을 합리화**할 예정이다.

❹ 마지막으로 검사, 제재, 인허가 업무를 **전면 디지털화**하여 **검사원 업무 배분, 기관간 자료공유, 진행상황 통지** 등을 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예정이다.

4. 금융위원장·금융감독원장 주요발언 및 향후계획

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오늘 자리는 국민에게 **보다 신뢰받는 금융행정**으로 나아가기 위한 변화를 논의하는 자리라면서, 그동안 **여러 제도개선**에도 **금융행정의 공공성·투명성**을 높여야 한다는 **요구가 지속**되어 왔다고 언급하였다.

특히, **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**은 **금융시장 안정**과 **금융소비자 보호**라는 책무 수행을 위해 **국민**으로부터 **검사·제재·인허가** 등 **광범위한 공적 권한을 위임**받은 만큼, 그 행사에 있어서도 **높은 수준**의 **공공성과 투명성**이 요구된다고 강조하였다. 또한, 금융회사에 **생산적·포용적 금융**에의 동참과 **책임있는 경영**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**금융행정 스스로도 변화와 혁신**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.

다만, 이번 **쇄신 방안**이 **금융 감독의 엄정함을 약화**시키는 것은 아니라면서, 앞으로도 **중대한 위법행위는 엄정히 대응**할 것이며, 오히려 **공정하고 합리적인 권한 행사**가 **국민의 신뢰**를 높이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.

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중요한 것은 **제도개선이 현장에서 체감**되는 변화로 이어지는 것인 만큼, **금융당국의 일하는 방식과 조직 문화**까지 변하도록 **양 기관이 함께 노력**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.

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행정이 **국민의 눈높이**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번 쇄신안을 통해 **금융행정 전반**의 **제도**와 **관행**을 **개선**하고, 금융감독의 **공공성·투명성·신뢰성**을 한층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.

다만, **금융회사**의 **건전성 제고**와 **금융소비자보호**라는 **금융감독원 본연**의 **소명**을 **견지**하는 기조 하에 **금융소비자**에게 **중대한 피해**를 입히거나 **시장질서**를 **훼손**하는 **위법행위**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**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**해 나가겠다고 밝혔다.

또한, **금융감독원은 쇄신안**을 **충실히 이행**하기 위해 **금융위원회와 긴밀히 협의**하고, 관련 법규 개정 등 **후속 조치**를 **신속하게 추진**할 것이며, **개선사항**이 **일선 검사·제재·인허가 업무**에 **제대로 반영**되도록 **지속 노력**하겠다고 밝혔다.

검사제재규정 개정 등 **후속절차**는 **'27년 1분기부터 순차적**으로 **진행**하고, **제재·인허가 TF 운영**을 통해 **추가적인 개선방안**을 마련할 계획이다.

< 향후 일정 >

1. 사후적발식 검사·제재에서 사전예방적 검사·제재로 전환합니다.		
정기검사 규정개정	검사·제재규정 개정	~'27년 2분기
제재 자율시정 강화	검사·제재규정 개정	~'27년 2분기
KPI 개선	검사역 KPI 기준 마련	~'27년 1분기
검사원 면책	감사원 협의 및 설치법 개정안 마련	~'27년 2분기
컨설팅 유형 비중관리	금감원 내부 제재유형별 관리	즉시 시행
기타 법적 근거 마련	금융위설치법 개정안 마련	~'27년 2분기
2. 검사·제재 과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합니다.		
중간검사결과 공개금지	공보 준칙 마련	~'27년 2분기
금융거래정보 열람제한	내부 전결 및 사후관리 절차마련	~'27년 2분기
검사권익보호심의회 신설	검사·제재규정 개정	~'27년 2분기
검사결과 보고	검사·제재규정 개정	~'27년 2분기
제재심 개선	세칙 개정	~'27년 2분기
금융위-금감원 공조강화	검사·제재규정 개정 등	~'27년 2분기
안건소위 전문성 강화	전문가 의견청취 방안 마련	~'27년 2분기
제재 양정기준 정비	제재 TF 운영·방안마련	~'27년 하반기
제재 효과 조정	제재 TF 운영·방안마련	~'27년 하반기
수사기관 고발·통보	검사·제재규정 개정	~'27년 2분기
직권재심 절차개선	검사·제재규정 개정	~'27년 2분기
3. 금융회사의 수검부담을 완화하고 공정성·투명성을 제고합니다.		
사전통지 개선	검사·제재규정 개정	~'27년 2분기
검사·처리기간 개선	검사·제재규정 개정	~'27년 2분기
자료요구 관련	검사·제재규정 개정	~'27년 2분기
기피권·반론권 보장	검사·제재규정 개정	~'27년 2분기
제재심 안건 열람	검사·제재규정 개정	~'27년 2분기
제재심 통지 관련	검사·제재규정 개정	~'27년 2분기
제재 공시개선	홈페이지 개선	~'27년 4분기
인허가심사중단제 개선	인허가 TF 운영·방안마련	~'27년 3분기
심사종결제 도입	인허가매뉴얼 개정	~'27년 1분기
스몰라이센스 규제개선	인허가 TF 운영·방안마련	~'27년 3분기
업무 디지털화	시스템 구축	~'27년 3분기

※ [별첨] 금융행정 쇄신방안

담당 부서 <총괄>	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	책임자	과 장	권유이 (02-2100-2830)
		담당자	사무관	권나림 (02-2100-2892)
		담당자	사무관	김재민 (02-2100-2833)
	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	책임자	서기관	김민하 (02-2100-2730)
		담당자	사무관	임서희 (02-2100-2525)
		담당자	사무관	김상협 (02-2100-2732)
<공동>	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	책임자	선임국장	노영후 (02-3145-7050)
		담당자	팀 장	손성기 (02-3145-7060)
	금융감독원 제재심의국	책임자	국 장	권재순 (02-3145-7800)
		담당자	팀 장	나세준 (02-3145-7821)
	금융감독원 감독혁신국	책임자	국 장	최정환 (02-3145-8300)
		담당자	팀 장	유상범 (02-3145-8310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대체불가 대한민국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